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특성과 조세회피*

김선미** · 신상훈***

〈요 약〉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상근조직인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기업 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존재여부와 실질적 내부감사 기능을 가진 지원조직 여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2020년 표본기간 동안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존재여부와 조세회피(BTD와 DD_BTD)는 음(-)의 관련성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달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내부감사 조직 혹은 내부감사 기능을 가진 조직인 경우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단순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존재보다는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의한 실질적 지원이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제도적 실효성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중소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강화 차원에서도 인력 및 예산 확보, 실무담당자 전문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회계투명성, 조세회피, 내부감사, 내부감사기능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과제번호 : 2020-3826)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전공 교수, smkim09@jnu.ac.kr, 교신저자

*** 넷마블 감사실 실장, 경영학박사, gsense@netmarble.com, 주저자

논문접수일 2022년 10월 13일 1차수정일 2022년 12월 31일 2차수정일 2023년 2월 9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10일

I. 서 론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의 특성과 기업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책무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의 역할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언론보도¹⁾에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수록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득 증대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의 존재여부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의 내부감사 부서 혹은 내부감사 기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비상근조직인 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독하고,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를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존재 여부와 지원조직이 내부감사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활용하여 동 정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업의 ESG 경영 중 하나인 기업의 지배구조 운영·관리가 기업의 조세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 부분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으로 결산 시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왔다.²⁾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감독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 제8조 제6항) 개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감사’로 상향하고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회

1) “회계 투명해지면 조세회피 억제… 세수도 증가한다.” (조세일보, 2020.07.03.)의 내용 일부 발췌.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대형기업의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감사인지정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내부통제제도를 포함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들의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에 공감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이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중략… “세무법인 한길텍스 고문(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회계투명성이 제고되는 것과 관련해 세수 증대 측면뿐만 아니라 근거과세나 적 정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의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 금융감독원

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여야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되었다.³⁾

이사회 하부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는 주로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협의체 의결기구(감사위원회모범규준, 2018.05.15.)로 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외부 컨설팅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⁴⁾ 즉, 기업은 자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을 두거나 외부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적인 대응은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이 부족하거나,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⁵⁾⁶⁾⁷⁾ 또한 외부 컨설팅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응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조차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평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보고에 대한 감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해야 하는 감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사위원회가 사측 입장에서 내부회계 취약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는 비상근으로 기업 실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인식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의 한계에서 기인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내 조직 중 비교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진 조직으로 평가받는 내부감사조직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인 평가 보다는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⁸⁾

따라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여,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9.29.에서 발췌

4) “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 2020.7, 삼정KPMG

5) 10대 그룹 감사실태 측정 ... ‘포스코 1위, 한화 꼴찌’ 조세일보 2020.06.16

6) 10대 기업 감사위 지원조직 ‘무늬만’ ... 단순 행정지원 대다수, 한국세정신문 2020.06.15

7) 내부회계관리제도 결과 분석 ...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413사 중 5사 ... 전년比 비중감소’(조세일보 2021.09.23.)

“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점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개사였는데 이 중 4개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인 통보한 내부회계 취약점에 대해 회사 대표자와 동일하게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8) “내부감사부서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의의”,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저널, Vol.15, 2020.7)의 내용 참조.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1. 감사위원회에 의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니터링 활동 가능 2.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3.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4. 외부감사인과의 협업 및 내부감사업무와의 결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5. 리스크 평가 및 감사업무 관련 전문성을 활용한 시너지 확보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의 역할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내 조직이 필요하며, 담당지원 조직의 특성이 감사위원회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담당지원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목적인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 및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자발적 감사위원회 설치(이창우·조형득 2004 ; 이상철 외 2008 ; 김구배 외 2011), 재무보고의 질 관련 연구(최관 외 2008 ; 안상봉·최승호 2008 ; 염성수·송연경 2008 ; 김일중·이장희 2009 ; 최현섭 외 2016 ; 최현섭·정래용 2017 ; 송보미 외 2020 ; 신혜정·우용상 2021), 감사인과의 관계(정영진 2005 ; 이장희·김일중 2008 ; 박재환·심규일 2009), 감사위원회 품질 제고 노력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최승호 2009 ; 이준일 외 2010 ; 홍창목·정진향 2012 ; 최종원·전경민 2012)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비상근으로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의 한계를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기업 내 조직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세무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관련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등을 수행한다. 또한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⁹⁾¹⁰⁾ 이에 따라 조직 내 감사부서는 정기적으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감사부서는 여러 업무 중 비정상적인 재무활동 즉, 성과 및 실적 조작을 위한 허위매출, 가공매출, 재무처리 부실과 이에 따른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감시하고 적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성과 허위 계상을 위한 분식회계, 검수 후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파악하며 개선 조치를 시행한 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세무영역을 포함한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을 감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지원조직의 특성과 세무적인 측면에서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 공시를 통하여 확보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특성이 세무적인 측면에서 조세회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업과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실질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를 세무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는

9)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한국공인회계사회

10)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특성이 회계정보 신뢰성 향상이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인 내부감사 지원조직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위원회 지원 인프라 체계가 감사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EGS에 대한 정보공시로 인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중소 상장사들도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인력 및 예산의 제약,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 자발적 설치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비에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한다.¹¹⁾ 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23년부터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¹²⁾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효과적 감사위원회 운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감사위원회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특성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감사위원회는 기존 감사가 대주주의 지배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1999년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수립된 감사위원회 제도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써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를 대신 수행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과 기업의 재무보고 감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 新외감법 도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권한, 위상, 그리고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 내부의 감독, 의사결정기구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감사위원회

11)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Vol. 17에서 발췌

12)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2년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으나 구축소요시간,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활동성, 전문성, 독립성 측면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먼저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때 기업의 회계부정을 감소시켜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재무보고의 질을 증가시킨다고 한다(Klein 2002 ; Xie et al. 2003 ; 최관 외 2008 ; 안상봉 · 최승호 2008 ; 염성수 · 송연경 2008 ; 최현섭 외 2016 ; 김일중 · 이장희 2009).

한 예로, 2019년 외감법 개정 이후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로 홍창목과 정진향(2012)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품질 향상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수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감사위원회 특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30대 기업집단 기업일수록, 수출비중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원수는 많은 반면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원수가 작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감사위원회의 활동성, 회계전문성, 감사위원의 계속재임기간은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원수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였고, 다른 상장회사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감사위원의 수는 회계와 재무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원수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의무적 설치와 그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기업특성(총자산이익률, 영업현금흐름, 전문경영자 지배기업더미, 부채비율, 사외이사비율 등)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자발적인 설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이창우 · 조형득 2004 ; 이상철 외 2008 ; 김구배 외 2011 등). 이후 감사위원회와 재무보고 질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감사위원회 활동성, 전문성, 독립성을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 그리고 회계 · 재무전문가 여부 등으로 측정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회계투명성 또는 재무보고 질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 실제이익조정, 조세회피 등을 사용하여 감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감사위원회 특성(전문성, 활동성, 독립성)이 재무보고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연구(Abbott et al. 2004 ; Krishnan and Visvanathan 2008 ; 안상봉 · 최승호 2008 ; 최관 외 2008 ; 염성수 · 송연경 2008 ; 최현섭 외 2016 등)와 감사위원회 특성이 회계보고의 투명성 제고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김일중 · 이장희 2009 ; 금보라 · 권순창 2014 ; 최현섭 · 박상연 2015 등)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사위원회 실효성과 관련된 다수 선행연구들은 감사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등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 효과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선행연구는 대체로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선행연구들(Agrawal and Chadha 2005 ; 윤승영 2019 ; 이보미 2020)은 감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내부감사 담당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보미(2020)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관한 고찰에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은 회사 지배구조에서 경영 감시와 함께 회계 감사라는 전문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그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지배구조 기관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승영(2019)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매우 방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나 비상근 회의체로 운영되고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인 업무감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들은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업무 현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감사위원회 감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정보의 수집 및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지원 부서로써 보조조직인 내부감사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수정(2018)은 상법 상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에서 보고되는 감사위원회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전히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며,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재무 관련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개선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근 연구로 신보선 외(2022)는 내부감사부서와 잠정이익의 품질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들은 감사위원회 지원업무와 내부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내부감사부서로 정의하고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의 기회주의적인 잠정이익 과대공시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재익 외(2022)는 내부감사부서가 외부감사인의 보수와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업 내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부서 기능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양(+) 또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관된 감사위원회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해야 하는 감사위원회는 비상임·비상근 회의체로 운영되어 내부감사 부서나 전담지원 조직과 같은 기업 내부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보조조직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부감사 조직이나 지원조직의 인적자원에 대한 수준이 높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품질 역시 높아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에 비해 회계분야의 실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기업의 세무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일상적인 기업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내부감사 부서와 같은 지원부서의 특성과 세무회계적 관점에서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관련분야 종사자에게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에서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보고서를 기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비상근조직의 한계로 인해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평가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기

업에서 비상근조직인 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내부감사 조직과 같은 지원조직의 특성과 회계투명성과의 관련성을 세무적 관점에서 확인하는 것은 해당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신뢰성과 운영실태 평가 신뢰성 및 나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¹³⁾

기존 연구의 경우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과 기업의 재무보고 결과, 재무보고 관련 효과성,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 그리고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회계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투입하는 인력구성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실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지원조직에 대한 연구가 아닌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부서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외감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 자체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조세회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세를 경감시키는 행위,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법이 예정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법 형식을 사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려는 행위 등 다양한 정의로 제시되고 있다(이준규·김갑순 2012; 선정규 2013; 고윤성·백혜원 2010).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비정상적인 법 형식을 사용하여 조세를 경감하려는 행위로 정의하되 절세, 탈세와 엄격하게 구분하여 보지는 않는다. 이는 광의의 조세회피 개념에 절세와 탈세 개념의 혼재로 이에 대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신상훈·차승민 2018). 이러한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신상훈과 차승민(2018)은 공기업 내부감사 품질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내부감사 품질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인 내부감사 부서의 품질은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홍창목과 정진향(2013)은 감사위원회 전문성(회계전문성, 세무전문성)과 시장투명성 수준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위원회의 세무·회계전문성은 조세회피를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거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조직의 효과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의 회계활동 등 경영활동을 점검한다면 조세회피 수준을 낮추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내부회계관리제

13)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대상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유형 분석 결과 전체 126개 기업 중 46%인 51개 기업에서 내부감사 부서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베이, 2020년 6월

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부감사와 같은 지원조직의 운영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수행하는 지원조직의 특성이 회계 투명성의 대용치인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가설설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절차를 ‘감사’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기업 내부적으로도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증대 되었다(내일신문, 2020.09.29.). 이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내부회계평가보고서에 작성(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9.29)하도록 한 것에서도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로 감사위원회 운영 책임이 증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6항도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조직 강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의 지원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부감사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조력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는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정(2018)은 상법 상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에서 보고되는 감사위원회 현황을 제시하였는데, 여전히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재무 관련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개선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승영(2019)도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이 내부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재무보고의 신뢰성 등을 파악함에 있어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상근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이 내부통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업의 영업환경, 주요한 운영절차,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재무 관련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8년 1분기).¹⁴⁾ 이를 위해 각 기업은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의 재무보고 절차와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활용 등 감사위원회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무보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삼정 KPMG, 감사위

14) 감사위원회 excellence series : 감사위원회 활동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2018년 1분기 Vol. 3

원회 저널¹⁵⁾). 이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존재가 비상근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기업 회계 투명성 향상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및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조세측면에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여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여부는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다.

규제당국은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도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 교육횟수, 지원조직 정보,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18.12). 이는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하고 감사위원회와 그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이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관련 전문성을 개선하여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처럼 감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시하는 기업도 2조원 이상 상장기업 기준 50% 정도이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단순행정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등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하는지는 실증적 의문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수정 2018 ; 윤승영 2019 등).

또한 현재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이론에 따라 대리인 이론과 경영자 헤게모니 이론에서 접근할 수 있다¹⁶⁾.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업의 비용으로 사적인 이익을 누리는 등 기업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를 견제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경영자 헤게모니 이론은 경영진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제공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이며 감시역할을 등한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현황을 바탕으로 기업의 감사위원회 지원 형태를 판단하면 감사위원회는 경영자 헤게모니 이론에 가까우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를 보좌하고 내부감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혹은 지원부서)에 대한 중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관리 감독 기구로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설치된 내부감사부서(혹은 지원부서)가 그 역할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단순한 업무지원으로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실증적 분석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부감사부서 운영현황 자료를

15) “상장기업의 내부감사기구 설치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을 중심으로”, 삼일PWC,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4, 2018년 2분기

16) “상장기업의 내부감사기구 설치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을 중심으로”, 삼일PWC,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4, 2018년 2분기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영향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이 개선되어 회계정보 신뢰성이 향상되는지를 세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기업은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감사 기능을 가진 조직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고,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신상훈·김선미 2015 ; 신상훈·차승민 2018). 따라서 비상근 감사위원회는 상근조직인 기업 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지원정도에 따라 업무수행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조직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내부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감독이 더욱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지원조직이 운영된다면,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조세회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전히 단순한 업무지원 수준으로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수준의 특성을 가진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그 실태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본래 목적인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므로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 감사위원회의 지원조직 중 내부감사기능조직 여부는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다.

2. 연구모형

감사위원회 전담조직의 지원은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내부감사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세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사용한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운영과 조세회피]

$$TA_{i,t} = a_0 + a_1AUDSUPC_{i,t} + a_2SIZE_{i,t} + a_3FORSALE_{i,t} + a_4LEV_{i,t} + a_5ROA_{i,t} + a_6BTM_{i,t} + a_7CAP_{i,t} \\ + a_8RD_{i,t} + a_9SALEGRW_{i,t} + a_{10}ASSGRW_{i,t} + a_{11}INV_{i,t} + a_{12}SG_{i,t} + a_{13}OCF_{i,t} + a_{14}BIG_{i,t} \\ + a_{15}LARGE_{i,t} + a_{16}FOR_{i,t} + a_{17}DA_{i,t} + YEAR + IND + \varepsilon_{i,t}$$

TA : 기업의 t년도 조세회피 대용치(BTD, DD_BTD)

$AUDSUPC$: 내부감사 지원조직

$AUDSUP$: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여부

$IAUDSUP$: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중 내부감사기능 조직인 경우 1, 아니면 0

$SIZE$: 당해연도의 시가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FORSALE$: 수출비중(수출액/매출액)

<i>LEV</i>	: 부채비율(부채총계/전년도자산총계)
<i>ROA</i>	: 총자산이익률(영업이익/자산총계)
<i>BTM</i>	: 장부가-주가비율
<i>CAP</i>	: 유형자산비율(유형자산(토지, 건설중인자산 제외)/자산총계)
<i>RD</i>	: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매출액)
<i>SALEGRW</i>	: 매출액 성장률
<i>ASSGRW</i>	: 총자산 성장률
<i>INV</i>	: 재고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i>SG</i>	: 판매비와 관리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i>OCF</i>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자산총계)
<i>BIG</i>	: 대형회계법인 감사 여부
<i>LARGE</i>	: 최대주주지분율
<i>FOR</i>	: 외국인지분율
<i>DA</i>	: 수정JONES모형에 따른 재량적발생액 (Dechow et al. 1995)
<i>YEAR</i>	: 연도별 더미변수
<i>IND</i>	: 산업별 더미변수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조직여부 및 그 운영과 회계투명성과의 관련성을 세무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추정금액은 Desai and Dharmala(2006)에서 제시한 모형을 이용한다.¹⁷⁾ 또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의 측정은 (세전이익-추정과세소득) 금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¹⁸⁾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의 관심변수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여부(AUDSUP)와 감사위원회 내부감사기능 조직 여부(IAUDSUP)이다.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관련 자료는 지원부서명, 평균경력, 담당직원 수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공시되고 있다.¹⁹⁾ 이에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운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효과적 운영으로 조세회피를 낮추도록 영향을 미친다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특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7) BTD=TACC+잔차항 모형을 사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영향을 제거한 잔차항을 조세회피로 측정하며, 잔차항의 크기가 클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여기서 추정과세소득은 법인세부담액/법정최고세율의 값을 이용하였다.

19)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 상 공시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지원조직 운영실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 예로, 롯데제과(2020.08.18.)의 공시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내부감사사무국	2	• 상무 1명(1년) • 책임 1명(1개월)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롯데제과(2020.08.18.)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 내부감사조직 관련 자료

한편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ROA*), 영업활동현금흐름(*CFO*), 자산성장률(*ASSGRW*), 유형자산비율(*CAP*) 등을 통제변수들로 사용한다. 기업규모(*SIZE*)는 높은 정치적 비용 발생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시가총액의 자연로그 값을 모형에 포함하였다(Gupta and Newberry 1997; 고윤성·이정화 2008; 신상훈·차승민 2018 등). 또한, 기업의 비용발생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부채비율은 이자비용 발생을 통한 감세효과 증가가 예측되므로 이를 통제하고자 부채비율(*LEV*)을 모형에 포함하였다(박종국·홍영은 2009; 신상훈·차승민 2018). 이에 더해 기업의 이익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유인이 크다는 선행연구(Gupta and Newberry 1997)를 바탕으로 총자산이익률(*ROA*)을 본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단기적 성과와 조세회피 관련성을 통제하고자 영업활동현금흐름(*CFO*), 자산성장률(*ASSGRW*)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신상훈·차승민 2018; 신상훈·김선미 2019). 한편 유형자산 투자 의사 결정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경한다는 선행연구(Stickney and McGee 1982; Gupta and Newberry 1997; 노현섭 외 2014)를 바탕으로 유형자산비율(*CAP*)을 모형에 포함한다.

이밖에도 국내 수출촉진 정책으로 인한 조세혜택으로 인해 조세측정변수와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박승식 외 2006)에 기반하여 수출비중(*FORSALE*) 변수를 모형에 포함한다. 기업 지배구조 변수로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조세회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강정연·김영철 2012; 김은희·김임현 2017). 대형회계법인여부(*BIG*)는 높은 감사품질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조세회피와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은희·김임현 2017)에 기반하여 이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산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YEAR*)와 산업더미(*IND*)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3.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회와 감사보조조직 현황을 입수 할 수 있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1.01)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²⁰⁾ 이에 사업보고서 상 공시되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대한 정보가 이용가능한 2018년-2020년

20) 감사위원회 모범규준(2018.05.15.)에서도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업공시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대한 정보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상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지원조직 및 내부감사담당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020.06).

표본기간 동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산월이 12월인 유가증권상장 법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표본을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 1) 금융산업 이외의 기업
- 2) 분석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3) 자본잠식 기업,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0보다 큰 기업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산월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결산월이 12월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제조업종과 다른 영업성격과 회계보고 특성을 지닌 금융관련 업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세회피를 측정함에 있어 신뢰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선정과정은 다음의 <표 1 : 표본 선정 과정 및 표본 분포>의 PANEL A와 같다.

다음으로 <표 1>의 PANEL B는 표본의 산업별 분포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별 분포를 나타낸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산업별 분포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중 477개 기업이 감사위원회지원조직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73개 기업이 감사위원회 내부감사기능²¹⁾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표본 선정 과정 및 표본 분포

PANEL A : 표본 선정 과정	
구 분	전체표본
2018년-2020년 KIS-VALUE에서 입수 가능한 유가증권상장 기업(결산월 12월 기업)	2,108
1) 금융업 및 부동산 투자업 해당 기업	(27)
2) 조세회피 측정치 등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1,411)
3) 자본잠식 기업,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0보다 작은 기업	(124)
최종표본	543

21) 신보선 외(2022)는 부서(명)을 기준으로 내부감사업무 담당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TREND REPORT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부서(명)을 감사실, 윤리경영팀, 경영지원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삼일 ACC TREND REPORT 2020 VOL1). 이에 본 연구도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중 내부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내부감사실, 법무감사실, 정도경영 회계감사팀, 청렴감사팀, 윤리경영팀, 윤리감사팀 등의 부서(명)을 기준으로 내부감사기능 지원조직 여부를 판단하였다. 내부감사부서들의 주요활동 내역은 대체로 감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활동,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표본 선정 과정 및 표본 분포 (계속)

PANEL B : 표본분포		
산업별 분포		
구 분	빈도	백분율
식료품제조업	37	6.8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3	0.5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14	2.5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7	1.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80	14.7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2	4.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4	2.5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8	3.31
1차금속제조업	32	5.89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6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2	4.0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	0.37
전기장비제조업	9	1.6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3	4.2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43	7.9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0	1.84
종합건설업	16	2.95
도매및상품중개업	31	5.71
소매업 ; 자동차제외	17	3.13
출판업	9	1.66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	0.1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4	0.74
정보서비스업	8	1.47
부동산업	2	0.37
전문서비스업	109	20.0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3	0.55
사업지원서비스업	1	0.18
합계	543	100

〈표 1〉 표본 선정 과정 및 표본 분포 (계속)

감사위원회 지원조직별 분포		
구 분	빈도	백분율
감사위원회지원조직=1	477	87.85
감사위원회지원조직=0	66	12.15
합계	543	100
내부감사기능조직=1	173	36.27
내부감사기능조직=0	304	63.73
합계	477	100

IV. 실증분석 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2〉는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조세회피 측정치인 *BTD* 및 *DD_BTD*의 평균은 0.058, 0.065인 양(+)의 값으로 평균적으로 조세회피 성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MEAN	MIN	P5	P50	P95	MAX	STD
<i>BTD</i>	543	0.058	-0.056	-0.009	0.044	0.181	0.296	0.060
<i>DD_BTD</i>	543	0.065	-0.053	-0.002	0.054	0.187	0.308	0.060
<i>AUDSUP</i>	543	0.878	0.000	0.000	1.000	1.000	1.000	0.327
<i>IAUDSUP</i>	543	0.319	0.000	0.000	0.000	1.000	1.000	0.466
<i>SIZE</i>	543	27.518	24.492	25.105	27.339	30.657	31.798	1.677
<i>FORSALE</i>	543	2.588	0.000	0.000	0.084	7.402	83.808	11.455
<i>LEV</i>	543	0.356	0.004	0.034	0.361	0.727	0.833	0.219
<i>ROA</i>	543	0.042	-0.031	-0.002	0.032	0.129	0.210	0.042
<i>BTM</i>	543	1.288	0.120	0.227	1.130	2.976	4.274	0.854
<i>CAP</i>	543	0.417	0.014	0.061	0.305	1.218	2.726	0.414
<i>RD</i>	543	0.061	0.000	0.000	0.000	0.248	1.737	0.245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계속)

변수	N	MEAN	MIN	P5	P50	P95	MAX	STD
<i>SALEGRW</i>	543	0.150	-0.877	-0.278	0.009	0.810	6.860	0.869
<i>ASSGRW</i>	543	0.047	-0.237	-0.080	0.024	0.264	0.595	0.116
<i>INV</i>	543	0.216	0.001	0.021	0.169	0.551	1.060	0.195
<i>SG</i>	543	0.093	0.004	0.009	0.052	0.315	0.462	0.098
<i>OCF</i>	543	0.054	-0.062	-0.018	0.047	0.157	0.210	0.052
<i>BIG</i>	543	0.808	0.000	0.000	1.000	1.000	1.000	0.394
<i>LARGE</i>	543	0.306	0.088	0.111	0.292	0.573	0.744	0.144
<i>FOR</i>	543	0.158	0.001	0.013	0.119	0.454	0.194	0.066
<i>DA</i>	543	-0.008	-0.212	-0.120	-0.006	0.111	0.194	0.066

주) 주요 변수 설명은 연구모형을 참고.

또한 관심변수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AUDSUP)의 평균값은 0.878이며, 이 중 내부감사기능을 하는 조직(IAUDSUP)의 평균값은 0.319로 전체 표본의 31.9%가 실질적인 내부감사기능 지원을 하는 조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의 평균값은 27.518, 부채비율(LEV)은 0.356으로 표본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산 총계 대비 유형 자산 비율은 평균값이 0.4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액 평균값은 2.5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변수로 외국인지분율(FOR)은 15.8%, 최대주주지분율(LARGE)은 30.6%의 비중을 보였으며, 재량적발생액(DA)의 평균값은 -0.008의 수치로 0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표 3>은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BTD와 DD_BT D는 1% 수준에서 0.977로 높은 상관관계수 값을 보여 조세회피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AUDSUP) 변수와 내부감사기능 조직여부(IAUDSUP)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음(-)의 방향성을 지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운영이 조세회피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와 장부-시장가 비율(BTM), 영업활동현금흐름(OCF)과 재량적 발생액(DA)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회귀분석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값이 5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본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상관관계

	BTD	DD_BTD	AUDSUP	AUDSUP	SIZE	FORSALE	LEV	ROA	BTM	CAP	RD	SALEGRW	ASSGRW	INV	SG	OCF	BIG	LARGE	FOR	DA
BTD	1																			
DD_BTD	0.977 (0.000)	1																		
AUDSUP	-0.016 (0.712)	-0.007 (0.870)	1																	
IAUDSUP	-0.032 (0.458)	-0.022 (0.606)	0.254 (0.000)	1																
SIZE	0.229 (0.000)	0.253 (0.000)	0.255 (0.000)	0.138 (0.001)	1															
FORSALE	-0.062 (0.148)	-0.075 (0.080)	0.028 (0.520)	-0.079 (0.065)	-0.089 (0.037)	1														
LEV	-0.147 (0.001)	-0.125 (0.004)	0.016 (0.702)	0.060 (0.163)	-0.014 (0.737)	-0.143 (0.001)	1													
ROA	0.413 (0.000)	0.431 (0.000)	-0.028 (0.511)	0.022 (0.606)	0.347 (0.000)	-0.071 (0.098)	0.051 (0.237)	1												
BTM	-0.251 (0.000)	-0.272 (0.000)	-0.111 (0.010)	-0.021 (0.619)	-0.506 (0.000)	0.084 (0.050)	-0.137 (0.001)	-0.409 (0.000)	1											
CAP	-0.045 (0.293)	-0.003 (0.944)	0.110 (0.010)	-0.112 (0.009)	0.003 (0.947)	0.162 (0.000)	-0.170 (0.000)	-0.062 (0.147)	-0.025 (0.563)	1										
RD	-0.004 (0.933)	-0.011 (0.796)	0.066 (0.126)	-0.031 (0.466)	0.017 (0.691)	0.159 (0.000)	-0.209 (0.000)	-0.017 (0.690)	-0.134 (0.002)	0.263 (0.000)	1									
SALEGRW	0.102 (0.017)	0.081 (0.061)	-0.046 (0.282)	-0.038 (0.381)	-0.002 (0.968)	0.019 (0.658)	-0.019 (0.662)	0.103 (0.017)	-0.045 (0.297)	-0.016 (0.696)	0.016 (0.704)	1								
ASSGRW	0.290 (0.000)	0.278 (0.000)	-0.084 (0.049)	-0.005 (0.899)	0.109 (0.011)	0.063 (0.141)	0.208 (0.000)	0.262 (0.000)	-0.177 (0.000)	-0.105 (0.014)	-0.010 (0.813)	0.271 (0.000)	1							
INV	-0.017 (0.700)	-0.017 (0.687)	-0.080 (0.064)	-0.154 (0.000)	-0.189 (0.000)	0.254 (0.000)	-0.088 (0.040)	-0.076 (0.076)	0.017 (0.690)	0.564 (0.000)	0.304 (0.000)	-0.023 (0.591)	-0.078 (0.071)	1						
SG	0.155 (0.000)	0.203 (0.000)	-0.013 (0.768)	0.126 (0.003)	0.201 (0.000)	-0.135 (0.002)	0.167 (0.000)	0.339 (0.000)	-0.273 (0.000)	-0.147 (0.001)	-0.105 (0.015)	-0.018 (0.679)	0.077 (0.071)	-0.126 (0.003)	1					
OCF	0.260 (0.000)	0.380 (0.000)	-0.001 (0.987)	0.041 (0.344)	0.278 (0.000)	-0.115 (0.008)	0.037 (0.000)	0.598 (0.000)	-0.270 (0.000)	-0.058 (0.177)	-0.073 (0.089)	0.030 (0.489)	0.108 (0.000)	-0.173 (0.000)	0.345 (0.000)	1				
BIG	-0.020 (0.639)	-0.010 (0.811)	0.134 (0.002)	0.082 (0.057)	0.382 (0.000)	0.028 (0.510)	0.030 (0.489)	0.136 (0.002)	-0.083 (0.054)	0.035 (0.412)	0.027 (0.525)	0.008 (0.857)	0.011 (0.796)	-0.032 (0.455)	0.148 (0.001)	0.088 (0.040)	1			
LARGE	-0.094 (0.029)	-0.088 (0.040)	0.050 (0.249)	0.084 (0.052)	-0.085 (0.049)	0.053 (0.217)	0.063 (0.000)	-0.151 (0.000)	-0.069 (0.106)	0.034 (0.423)	0.029 (0.493)	0.057 (0.187)	-0.017 (0.697)	-0.012 (0.783)	0.024 (0.572)	-0.128 (0.003)	0.121 (0.005)	1		
FOR	0.275 (0.000)	0.307 (0.000)	0.144 (0.001)	0.039 (0.371)	0.696 (0.000)	-0.084 (0.050)	-0.086 (0.046)	0.344 (0.000)	-0.271 (0.000)	-0.059 (0.171)	-0.064 (0.135)	-0.020 (0.650)	0.082 (0.057)	-0.170 (0.000)	0.325 (0.000)	0.357 (0.000)	0.231 (0.000)	-0.223 (0.000)	1	
DA	0.034 (0.426)	-0.075 (0.081)	0.033 (0.442)	-0.054 (0.210)	-0.088 (0.039)	-0.088 (0.034)	0.091 (0.027)	-0.095 (0.003)	-0.128 (0.022)	0.052 (0.027)	0.095 (0.099)	0.071 (0.653)	-0.019 (0.265)	0.048 (0.000)	0.163 (0.000)	-0.560 (0.000)	-0.044 (0.305)	0.034 (0.436)	-0.149 (0.001)	1

주) 주요 변수 설명은 연구모형을 참고. 괄호안의 값은 p-VALUE를 나타낸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4>는 가설 1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조세회피 측정치로 BTD 및 DD_BTД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음(-)의 방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 가설 1 검증—감사위원회지원조직 여부와 조세회피

변수명	TA=BTД		TA=DD_BTД	
	Coeff.	t-value	Coeff.	t-value
Intercept	0.029	0.500	0.032	0.550
AUDSUP	-0.001	-0.130	-0.002	-0.330
SIZE	0.001	0.450	0.001	0.380
FORSALE	0.000	-1.520	0.000	-1.550
LEV	-0.059***	-4.600	-0.056***	-4.380
ROA	0.310***	3.060	0.223**	2.240
BTM	-0.006*	-1.780	-0.007**	-2.180
CAP	-0.010	-1.550	0.000	-0.050
RD	-0.008	-1.280	-0.009	-1.260
SALEGRW	0.001	0.350	0.000	0.080
ASSGRW	0.121***	3.370	0.122***	3.420
INV	0.030*	1.890	0.027*	1.780
SG	-0.022	-0.740	-0.009	-0.310
OCF	0.136*	1.800	0.274***	3.780
BIG	-0.016**	-2.300	-0.016**	-2.300
LARGE	0.004	0.290	0.010	0.700
FOR	0.067**	2.450	0.070**	2.520
DA	0.096*	1.680	0.047	0.850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Adj R-sq	0.3128		0.3379	
F value	6.48***		7.15***	
표본수	543		543	

주) 주요 변수 설명은 연구모형을 참고. ***, **, *은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이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단순한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지정된 조직이 포함(감사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2020.06)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같은 역할을 보좌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내부지원조직의 존재는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신보선 외 2022). 또한 사업보고서상 일부 감사위원회 지원활동은 기획 및 평가 업무, 부서총괄, 사무국 업무, 법정교육실시, 자료관리 등 단순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지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여부와 조세회피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변수로, 부채비율(LEV)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이자비용 등과 같은 감세효과로 인해 조세회피 경향이 낮음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박종국·홍영은 2009; 신상훈·차승민 2018). 또한, 총자산이익률(ROA), 자산성장률(ASSGRW), 그리고 영업활동현금흐름(OCF)은 조세회피(BTD 및 DD_BTD)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기업의 성과와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Gupta and Newberry 1997; 김은희·김임현 2017; 신상훈·차승민 2018; 신상훈·김선미 2019)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대형회계법인(BIG)여부는 선행연구(김은희·김임현 2017)와 같이 음(-)의 방향성을 보였다.

<표 5>는 감사위원회지원조직 중 내부감사기능조직 여부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한다.²²⁾ 관심변수인 내부감사 기능조직(IAUDSUP)은 조세회피(BTD 및 DD_BTD)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감사 혹은 진단기능을 가진 내부감사 조직 혹은 내부감사 기능을 가진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실질적 지원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²³⁾ 다른 통제변수들의 결과는 <표 4>와 동일하게 부채비율(LEV)은 음(-)의 관련성이 있으며, 이익성과 지표들은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2) <표 5>의 분석결과는 내부감사기능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기업특성 차이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내부감사기능 조직여부(IAUDSUP)별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분석결과, 내부감사기능 조직(IAUDSUP=1) 표본집단의 기업규모(SIZE), 판매관리비비율(SG), 그리고 대형회계법인(BIG)변수의 평균과 중위수 값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반면, 내부감사기능 조직이 아닌 경우(IAUDSUP=0)에는 재고자산비율(INV)변수에서만 평균과 중위수 값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조세회피와 양(+) 또는 음(-)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변수(김진희·정재욱 2006; 고윤성·이진현 2011; 노현섭 외 2014; 김은희·김임현 2017 등)로 특정 집단의 일관된 기업특성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3) 본 실증분석 결과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 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 5〉 가설 2 검증—감사위원회지원조직 중 내부감사기능조직 여부와 조세회피

변수명	TA=BTD		TA=DD_BT D	
	Coeff.	t-value	Coeff.	t-value
Intercept	0.025	0.400	0.031	0.490
IAUDSUP	-0.009 *	1.920	-0.009 *	-1.800
SIZE	0.001	0.540	0.001	0.390
FORSALE	0.000	1.240	-0.000	-1.240
LEV	-0.056 ***	4.190	-0.052 ***	-3.930
ROA	0.255 **	2.400	0.180	1.610
BTM	-0.007 *	1.870	-0.007 **	-2.130
CAP	-0.010 *	1.680	-0.007	-0.180
RD	-0.007	1.040	-0.006	-0.980
SALEGRW	0.002	0.380	0.000	0.060
ASSGRW	0.087 **	2.170	0.093 **	2.310
INV	0.022	1.300	0.018	1.070
SG	0.010	0.300	0.018	0.570
OCF	0.166 **	2.120	0.300 ***	3.960
BIG	-0.014 *	1.810	-0.013 *	-1.700
LARGE	0.007	0.450	0.013	0.820
FOR	0.047 *	1.670	0.052 *	1.810
DA	0.112 *	1.910	0.065	1.150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Adj R-sq	0.2925		0.3164	
F value	5.58 ***		6.12 ***	
표본수	477		477	

주) 주요 변수 설명은 연구모형을 참고. ***, **, *은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업의 감사위원회 지원 인프라 체계로 지원조직의 존재여부와 내부감사기능 지원 조직 여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감시·감독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를 보좌하는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존재하는 표본 중 내부감사기능 지원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단순 내부감사지원조직 설치가 아닌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2018년 말 이후 강화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그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활동 자료, 지원조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평가의 신뢰성, 감사위원회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과 그 실효성 측면을 세무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체 인력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력 현황(내부회계관리제도 투입인원, 공인회계사 여부 등)과 관련된 연구(유해영 외 2012 ; 정진향·마희영 2012 ; 김정교 외 2013 ; 신일항 외 2014 ; 김동영 2015 ; 양준선·어영준 2016 ; 김봉현·여영준 2017 ; 최현정 2020 ; 황국재 외 2020 ; 김선미 2020 등)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실태와 그 특성에 따른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영향을 세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과 관련된 최근 여러 논의(한겨레, 2020. 12.09. ; 내일신문, 2020.09.29)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할 것이다.

특히, 이보미(2020)와 윤승영(2019) 등은 내부감시기구로서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해 재무보고, 내부통제 운영실태, 기업경영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다른 지배구조기관 보다 회계, 재무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뿐 만이 아닌, 감사업무 자료 수집, 운영 보조, 운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지원조직 활용 등의 지원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법적 측면에서 내부감사 보조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연구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와 그 보조조직의 역할을 회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와 그들의 일상적인 내부감사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조직의 역량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통제 담당자와 관계 당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와 그 보조조직의 역할을 살펴본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8년 이후 기업의 감독·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절차를 감사로 상향하는 제도 등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 자체적으로도 회계정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와 그 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일련의 노력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개선시키는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동 연구결과는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상 공시되는 부서(명)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감사기능 정보는 실질적인 활동내역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2018. 기업지배구조.
-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020. 한국공인회계사회/삼정회계법인.
- 강정연 · 김영철. 2012.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 37-67.
- 고윤성 · 백혜원. 2010.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49-76.
- 고윤성 · 이정화. 2008.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6호 : 2823-2848.
- 고윤성 · 이진환. 2011. “접대비지출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 101-132.
- 김구배 · 정승호 · 박상민. 2011.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설치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9권 제1호 : 47-74.
- 김동영. 2015. “기업사회적책임의 건전성과 경제발전기여도가 내부회계 담당인력 수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29권 제5호 : 203-228.
- 김봉현 · 여영준. 2017.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투자와 보수적 회계처리”. 경영컨설팅연구 17 : 1-12.
- 김선미. 2020.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본제조달비용의 관계”.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62 : 89-122.
- 김은희 · 김임현. 2017.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조세회피”. 회계저널 제26권 제4호 : 39-76.
- 김일중 · 이장희. 2009.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특성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 175-203.
- 김정교 · 유순미 · 김현진. 201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 특성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55권 제2호 : 277-321.
- 김진희 · 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 97-124.
- 금보라 · 권순창. 2014. “감사위원회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4집 : 197-217.
- 노현섭 · 김정찬 · 정미화. 2014. “내재적 조세를 사용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간의 관계”.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4권 제2호 : 23-42.
- 박승식 · 장지인 · 정길채 · 배성태. 2006.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 213-241.
- 박종국 ·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05-135.
- 박재환 · 심규일. 2009. “감사위원회 도입 및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6호 : 3873-3893.

- 선정규. 2013. “조세회피행위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1권 : 47-74.
- 송보미 · 최규담 · 유현수. 2020.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선도형 경영전략을 채택하는 기업의 공격적 이익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5권 제1호 : 173-206.
- 신보선 · 한종수 · 박채린 · 현승임. 2022. “내부감사부서와 잠정이익의 품질”. 회계학연구 제47권 제2호 : 203-238.
- 신상훈 · 김선미. 2015. “내부감사와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공기업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57권 제3호 : 1-26.
- 신상훈 · 차승민. 2018. “내부감사품질과 조세회피 - 공기업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제14호 : 383-412.
- 신상훈 · 김선미. 2019. “수주산업 경영자의 개별 성과보수와 조세회피”. 세무학연구 제36권 제1호 : 55-79.
- 신일항 · 이명건 · 이은철. 2014. “산업 내 경쟁정도와 실제이익조정 - 기업지배구조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9권 제3호 : 57-90.
- 신혜정 · 우용상. 2021. “내부감사인의 특성이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과 보고 이익의 품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 1-38.
- 안상봉 · 최승호. 2008. “감사위원회 품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1호 : 99-126.
- 양준선 · 여영준. 201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적자원투자와 재무보고의 품질”. 관리회계연구 16 : 75-107.
- 염성수 · 송연경. 2008. “회계부정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이 회계정보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 1-26.
- 유해영 · 이호영 · 채수준. 20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특성이 회계오류발생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1권 제6호 : 1347-1373.
- 윤승영. 2019.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 보조조직의 역할”.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 161-183.
- 이보미. 2020. “상법상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2호 : 43-71.
- 이상철 · 박재완 · 윤종철. 2008.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수요 요인에 대한 연구 - 대리인비용과 경영자 감시유인을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48호 : 289-322.
- 이수정. 2018. “회계전문가 감사위원의 현황과 문제점”. 경제개혁연구소 2018-4호 : 1-19.
- 이장희 · 김일중. 2008.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특성이 비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22집 : 135-160.
- 이재익 · 이호영 · 오슬기. 2022. “내부감사부서의 특성과 외부감사노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64권 제2호 : 127-152.

- 이준규 · 김갑순. 2012.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주)영화조세통람 : 24-25.
- 이준일 · 최선화 · 최종학. 20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와 감사보수와의 관계”.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51호 : 191-225.
- 이창우 · 조형득. 2004.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제38권 2-3호 : 25-61.
- 정영진. 2005. “감사위원회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41호 : 145-166.
- 정진향 · 마회영. 2012. “내부회계관리 운영인력의 특성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 연구 제19권 제4호 : 101-117.
- 최관 · 박종일 · 조현우. 2008.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특성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48호 : 351-389.
- 최승호. 2009. “감사위원회 특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재무제표 재작성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 561-582.
- 최종원 · 전경민. 20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연구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1권 제4호 : 135-161.
- 최현섭 · 강내철 · 박상연. 2016. “감사위원회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21권 제5호 : 71-93.
- 최현섭 · 박상연. 2015.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특성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회계정보연구 제33권 제4호 : 461-482.
- 최현섭 · 정태용. 2017. “감사위원 선임방식의 변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3집 : 223-243.
- 최현정. 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력의 특성과 이익지속성”.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5호 : 1657-1684.
- 홍창목 · 정진향. 2012.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1권 제5호 : 1157-1196.
- 홍창목 · 정진향. 2013.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시장투명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2호 : 187-212.
- 황국재 · 강평경 · 정동진. 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불성실공시지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관리회계연구 제20권 제2호 : 55-78.
- Abbott, L. J., S. Parker, and G. F. Peters. 2004.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restatement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3(1) : 69-87.
- Agrawal, A., and S. Chadha. 2005.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 Scandal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 371-406.
-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 Accounting Review* 70(2) : 193–225.
-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 145–179.
- Gupta. S., and K. Newberry. 1997.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 Evidence from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 1–34.
- Klein, A., 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Accounting and Economics* 33 : 375–400.
- Krishnan, G. V. and G. Visvanathan. 2008. Does the SOX definition of an accounting expert matter?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directors' accounting expertis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3(3) : 827–857.
- Stickney, C. P. and V. E. McGee, 1982.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2) : 125–152.
- Xie, B., W.DavidsonIII, and P.DaDalt,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 The Roles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9 : 295–316.

Tax Avoid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 Organization of the Audit Committee

Seon Mi Kim* · Sang Hoon Shin**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on tax avoid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xistence of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that supports the audit Committee as a part-time organization, and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with a practical internal audit function on tax avoidance. If it is common for audit committees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as the main role, we can expect that audit committees restrict tax avoidance of firms. According to a recent newspaper article, internal audit department should help to increase tax revenue with greater accounting transparency (Joseilbo, 2020.07.03.), we propose that internal audit department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to strengthen accounting transparency for audit committees in some circumstances. Prior studies focus on impact of the manpower composition (CPA, the number of employees, etc) or operation of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on the accounting errors, finance decision, and so on (Ryu et al. 2012 ; Choi 2020 ; Kim 2020 ; etc).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of internal audit function for strengthening the audit committee's capacity and the impact on corporate accounting transparency as a tax perspective.

To evaluate whether internal audit department mitigates or intensify tax avoidance, we first examine a setting in which firms have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are likely reduced tax avoidance. We also examine how these internal audit department roles affect tax avoidance differently. As a result of analyzing listed companies during the sample period of 2018–2020, there is a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ence of the support organization of audit Committee and tax avoidance (BTD and DD_BTD), but it is not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trast, we find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decreased in the case of firms with an internal audit organization or the support organization with an internal audit function. This means that firms with the actual internal audit fun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by reducing behavior of tax avoidance.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mkim09@jnu.ac.kr, Corresponding Author

** Ph.D, Division Director, Internal Audit Division, Netmarble, gsense@netmarble.com, First Author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n additional contribution by presenting the direc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internal audit department to evaluat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regulatory authorities are aware of the need to secure manpower and budget, an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ose in charge of small and medium-sized listed companies to effectively operate the audit committee. Thu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we present a policy point for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listed companies.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to examines the impact ESG. Thus, we highlight a previously undocumented benefit associated with effective role of internal audit department by supporting audit committees.

〈Key words〉 Support of organization of the audit committee, Accounting Transparency, Tax avoidance, Internal audit function